

문서번호	부과과-101386
결재일자	2015.6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재 산 1 팀 장	부 과 과 장	기 획 재 정 국 장	
조청란	代조청란	이경화	06/24 장기현	
협	주 택 평 가 팀 장	나문찬	징 수 과 장	방극내
조	지 방 소 득 세 2 팀 장	박두선	법 인 관 리 팀 장	이순기
	자 동 차 세 팀 장	안길삼	지 방 소 득 세 1 팀 장	강문승
			재 산 2 팀 장	배정관

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계획

추진근거

- 지방세기본법 제26조,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
- 서울시 세무과-13426(2015.6.15)호

추진기간 : 2015. 6월 ~ 12월

지원대상 : 메르스 자택격리자 15명(2015.6.25현재)

대상세목 :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(종업원분·재산분), 지방소득세

지원내용 :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(최대 1년)

추진방법 : 보건소에서 명단 협조받아 1:1 유선 안내 후 신청에 의거 접수·처리

행정사항 : 주간보고(서울시)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

기 획 재 정 국
부 과 과

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

- 「메르스 사태」 관련, 메르스 확진자 등이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거나,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,
-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시행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지방세기본법 제26조,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
-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-1727호(2015. 6.11) 지원기준
- 서울특별시 세무과-13426호(2015. 6. 15) 지원기준 통보

II 메르스 피해 현황 및 문제점

- 메르스 피해자가 은행방문 등이 어려워, 6월 납기 자동차세 및 7월 납기 재산세 납기내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■ 우리구 메르스 피해자 현황

(2015.6.25기준, 단위:명)

합계	확진자	자택격리자
15	0	15

기한연장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「시행령」 제5조제6조

- (요건)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사업상 중대한 위기, 재해,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
 -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내용)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등을 연장 조치 가능
 -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연장

징수유예 등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 및 「시행령」 제67조

- (요건) 풍수해·벼락·화재·전쟁·도난·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,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
 -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(내용)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

☐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(전 세목)

- (요건)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-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
- (내용)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,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

IV

우리구 지방세 지원 계획

☐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: 즉시시행

- 대 상 : 메르스 피해자 15명(자택격리자)
- 세 목 :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(종업원분, 재산분), 지방소득세
- 방 법 : 피해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
 - 피해자 명단 파악 및 기한연장 등 안내 : ‘15. 6월 중
 - 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현황 제출(서울시) : ‘15. 6.26부터 주간보고

☐ 지방세 감면 : 메르스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

감면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, 사회·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함 - 현재 2005.2.24, 2003헌바72

- 우리구 메르스 피해자(확진자·격리자)명단 요청 협조 : 보건기획과
 - 메르스 1:1 모니터링을 통한 기한연장 등 안내
-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철저
 -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토록 조치
-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현황 주간보고(서울시)
- 병원 등 의료기관 및 피해자 추가 발생시 지원대상에 포함